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승필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3. 4. 11.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제43호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대표발의자 : 서승필

공동발의자 :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입법예고 : 2023. 4. 11. ~ 4. 15.(5일간)

□ 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소식지 등을 말한다.
2.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영상, 의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2. SNS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5.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SNS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회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 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승필 의원 외 4명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